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38-10

www.mafra.go.kr

#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목 차

###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I. 사업개요 .....	3
II. 주요내용 .....	4
III. 사업추진체계 .....	8
※ 참고 .....	23
※ 관련 서식 .....	39

### ■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I. 사업개요 .....	93
II. 주요내용 .....	94
III. 사업추진체계 .....	102
※ 관련 서식 .....	123

###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I. 사업개요 .....	153
II. 주요내용 .....	154
III. 사업추진체계 .....	160
※ 관련 서식 .....	187



Part

# 01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I. 사업개요

II. 주요내용

III. 사업추진체계

※ 참고

※ 관련 서식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정광호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사무관 김영석 (지자체 및 민원 담당)	044-201-1781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부당수령 콜센터)	1588-6830

## I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2.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자원구성 : 국고 100%

### 4. 추진경과

-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 쌀직불금과 받고정직불금 통합 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Ⅱ 주요내용

### 1.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단,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 지급대상 제외 농지 (법 제5조제1항)

- ①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의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가능
- ④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여 등록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 \*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 등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 2.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①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신규 대상자(① 이외의 자)

-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농업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④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하는 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승계자

-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불가피한 사유 : 고령, 질병, 부상 등 논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급대상 제외자 (법 제6조제3항 및 제14조)

-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 \*\*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 ③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 ④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 ⑤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시행령 제5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 예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

-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③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 연접한 읍·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 3. 지급요건

#### ① 고정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지급
  - 단,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 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시행령 제7조)

-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 ① 미충족 : 해당농지 고정·변동 전부 미지급
- ②~④ : (1개 미충족) 해당농지 고정 1/2 감액, 변동 전부 미지급 (2개이상 미충족) 고정·변동 전부 미지급

#### ②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
  - 단,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미충족 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시행규칙 제9조)

- ①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 ②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 \* ①, ② 중 1개 미충족 : 해당농지 1/2 감액, 모두 미충족 : 해당농지 전부 미지급

###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 지급단가

- 고정직불금: 평균 1백만원/ha (진흥 안 1,076,416원, 진흥 밖 807,312원)
- 변동직불금: 해당연도 수확기(10월~다음연도 1월)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지급단가 = [(목표가격 -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 ● 지급금액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평균생산량(가마/ha) × 재배면적(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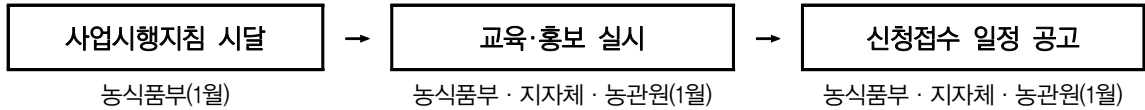
#### ● 지원형태: 국고 100%

#### ● 지원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 ▶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 일정 공고
② 직불금 신청·등록	2~4월	▶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등) - 농지소재지 읍·면·동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③ 신청자 정보 공개	5~9월	▶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④ 신청내용 조사 (서면·현지) - 등록증 교부	5월	▶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동) ▶ 등록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⑤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등록내용 변경신청 (신고)	5~9월	▶ 지급요건 검증(농식품부, 지자체 등) *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필수점검)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신규·관외 신청자, 팜맵·경영체정보 불일치, 전년대비 신청면적이 많은 경우 등 ▶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읍·면·동)
⑥ 고정직불금 지급	10월	▶ 지급대상자·면적·금액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 통장계좌입금(시·군·구→지급대상자) ▶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⑦ 농약잔류·토양 검사	9~11월	▶ 농약잔류검사(농관원)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⑧ 변동직불금 지급	다음연도 2~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 * 지급대행: 농협경제지주회사(시·군 농정지원단)
⑨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 직불금 콜센터(1588-6830)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 (상·하반기)

## 1. 신청·접수 준비



###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 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 다.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전년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내역을 발송하는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라. 공동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구)

- 시·군·구는 관할지역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공동접수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월)
    - 농관원과 협의내용, 읍·면별 공동접수센터 운영 일정, 기관 간 협조체계 등 포함
- \* 시·군·구 주관으로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 설치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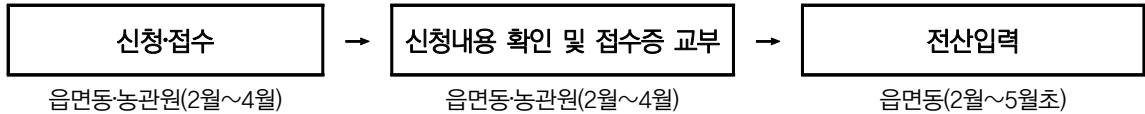
### 마.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관원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바.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

## 2. 신청·등록



### 가. 직불금 신청(농업인등)

- 쌀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등록 신청
- 신청기간: 2. 1. ~ 4. 30.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나. 신청 접수·등록(지자체, 농관원)

#### 1 신청서류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서 접수

####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 지원·사무소와 협의하여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그 밖에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 미설치 가능
-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나빠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리·행정리)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 ③ 공동접수센터에서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합동근무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경영체 정보 확인
  - 공동접수센터에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반드시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 접수
  -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된 서류는 지자체 및 농관원 담당자가 합동으로 복사·이송
- ④ 공동접수센터 운영 이후에는 농업인이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제출

## ②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 ③ QR코드 스캔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 Agrix 접수정보에 직접 입력
  -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19년부터는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 ④ 접수증 발급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 발급

## ⑤ 전산입력

- 입력기간: 2월 ~ 5월초
- 입력내용: 등록신청서 2번항목의 '⑥ 직불정보'
- 입력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 접수기관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 관할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를 이송 받은 후 입력 내용 확인

### 신청정보 전산입력

-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 ② 농관원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에서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에서 모든 전산입력
- ③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 기간(4월)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④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경영주 외 농업인 추가, 농지 추가)
  - 읍·면·동에서 직불정보를 우선 입력 후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 등록기간(5월) 내 경영체정보 입력 후 읍·면·동은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⑥ 서류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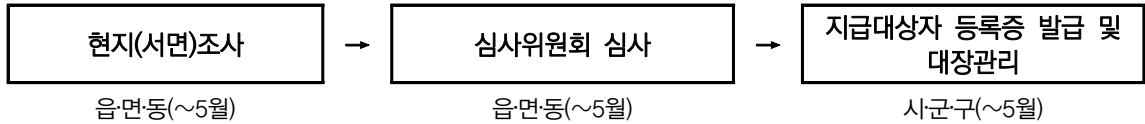
- **이송기간:**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교환
- **원본보관:** 최초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보관
- **이송기관**
  - (지자체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지자체 → 농관원)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이송
  - (농관원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 농지소재지 읍면동이 2곳 이상인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으로 서류 이송,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후 타 읍면동으로 서류 재이송

## 3. 신청자 정보공개

- **공개기간:** 5월 ~ 9월
- **공개방법:**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http://www.agrix.go.kr)에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대해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청
  - 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등록신청한 농지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 못한 경우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 4. 신청내용 조사 및 등록증 교부



#####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읍·면·동)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신청서 등을 전달 받아 조사에 활용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구, 읍·면·동)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방법:** 지급대상 농지·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신청자를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별지 제13호 서식) 발급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별지 제14호 서식)
    - \* 제외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발급



## 5.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록내용 변경 신청·신고)

지급요건 검증	/	이행점검	/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읍·면·동(5월~9월)		농관원(5월~9월)		읍·면·동(5월~9월)

### 가. 지급요건 검증(읍·면·동)

- **검증대상:**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검증방법:**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나. 이행점검(농관원)

- **점검기간:** 5월말 ~ 9.15.(지자체 통보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쌀직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등록 농지의 50% 이상(현장점검 30%))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필히 조사대상에 포함
- **점검내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고정),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변동)  
- 폐경여부, 벼 재배 여부, 2명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 경계의 설치 및 관리여부 등 중점점검 \* 필요시 지자체에서 필요자료 요구(지자체 협조)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실시 \* 이행점검표(별지 제16호 서식) 참고  
- 요건 미비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
- **결과통보:** 농관원은 매월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별지 제17호 서식)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 \* 점검결과에 대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시 서면통보 생략 가능  
- 시·군·구에는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9.15.까지 Agrix시스템을 통해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은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19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9월)

## 다. 등록내용 수정 및 변경(시·군·구, 읍·면·동)

### ①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 ②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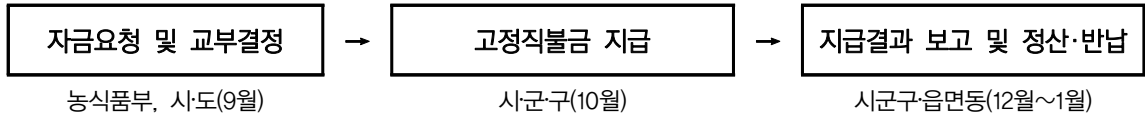
- 변경기간: 9. 15.까지
- 신청 대상자: 등록농지의 면적 또는 벼재배 면적이 변경된 경우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등록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 ③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 신청되지 않았던 농지, 농외소득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신청했던 농지는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6. 고정직불금 지급



### 가.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 나. 고정직불금 지급(시·군·구, 읍·면·동)

- **지급시기:** 10월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은 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고정직불금 입금
  - 입금 시 쌀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쌀직불”이라 통장에 명기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다. 지급결과 보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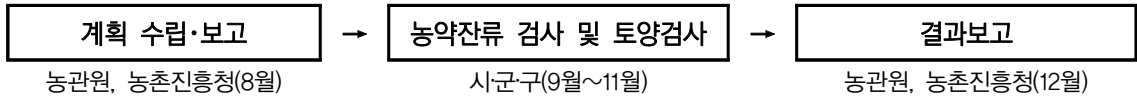
- 시·도는 고정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라. 정산 및 반납(시·군·구, 읍·면·동)

- 시·도는 고정직불금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고정직불금에 대한 정산을 확정
- 시·도는 고정직불금 집행잔액을 반납

시·도(시·군·구)는 자금교부 후 신속히 고정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경, 성립전 등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전 계좌검증 철저

## 7. 농약잔류·토양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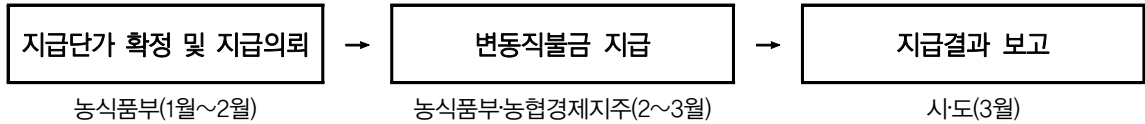
### 가. 농약잔류 검사(농관원)

- **검사기간:** 9월 ~ 11월
- **검사대상:**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재배면적, 전년도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표본선정
  - \* 전년도 농약잔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농지(농업인)는 필히 포함
- **검사방법:**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따라 분석
- **시료채취:**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에서 무작위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으로 시료제조
- **판정기준:** 식약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결과통보:** 농관원은 검사완료 후 1주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결과조치:** 시·군·구는 검사결과 부적합 농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결과보고:** 농관원은 검사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별지 제27호 서식)으로 보고(12월)

### 나.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 농업기술원)

- **검사기간:** 9월 ~ 11월
- **검사대상:**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토양검사 세부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대표성을 가지도록 표본선정
  - \* '17년, '18년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농업인)의 지속관리 및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시료채취:**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기간을 정하여, 대표성을 가지도록 채취
- **검사항목:**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 **판정기준:**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을 토대로 판정
- **결과통보:** 기술센터는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및 도 기술원, 농진청에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명단 통보(없으면 ‘해당없음’ 통보)
- **결과조치:** 시·군·구는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 토양관리 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결과보고:** 농진청은 검사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별지 제28호 서식)으로 보고(12월)

## 8. 변동직불금 지급



### 가. 지급단가 확정(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목표가격 및 수확기산지쌀값을 반영하여 변동직불금 단가 확정·고시

### 나. 지급의뢰(시·도, 시·군·구)

-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2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농식품부는 시·도의 요청을 토대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배정
  -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시·군 농정지원단에 배정된 자금 전금
- 시·군·구는 관할 농정지원단에 변동직불금 지급의뢰(별지 제23호 서식)

### 다. 변동직불금 지급(농협경제지주·농정지원단)

- 지급시기: 2020년 2~3월
- 농협경제지주회사(농정지원단)은 시·군·구의 지급의뢰에 따라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변동직불금 입금
  - 입금 시 쌀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쌀직불”이라 통장에 명기

### 라. 지급결과 보고(시·도)

- 농협경제지주는 변동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시·군·구 및 농식품부에 보고(3월)

## 9. 사후관리

### 가.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1년간
- 공개방법: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수령자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청

### 나. 사업추진 상황점검

- 교차점검: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실시(4월, 10월)
- 중앙·지방 합동점검: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5월, 12월)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 10월) 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 다. 부당수령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군·구)와 콜센터 연중운영

#### 신고 및 처리 절차

- ① 해당 시·군·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 (1588-6830)를 통해 구두신고 \* 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
-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는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 구두신고 시 최소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 라. 신고포상금

- **포상금:** 건당 50만원, 1인 연 200만원 한도
- **대상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하여 부당수령임이 확인된 경우
- **수령절차**
  - 시·도는 서면(별지 제29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포상금 지급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보

###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 ①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 ②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부당수령자로 판명된 경우만 해당)
- ③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법 제1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 내에서 증가산금 부과
- 징수(회수)절차
  - 납입고지서 발급: 시·군·구는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 시·군·구는 변동직불금 납입고지시 관할 농정지원단에도 회수 협조문서 시행(연산, 부당수령금, 대상자, 납부기한 등 포함)

- 납입: (고정)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  
 (변동) 시·군·구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 시·군·구는 변동직불금 납입과 동시에 농정지원단에 납입내용 통보(연산, 납부자,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납입금액, 납입일시, 납입계좌 등은 반드시 포함)
- 결과입력: 시·군·구(읍·면·동)는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바.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또는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 사. 벌칙

- 아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자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참 고

1. 용어의 개념
2. 농촌지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
3. 신청·접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4. 신청시 제출서류
5.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
6.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7. 부당수령 신고·접수 시 처리절차
8. 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 참고 1 용어의 개념

### 1. “논농업”

- ① **논농업(법 제2조제2호)** :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및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 농작물: 식량·채소·과실·화훼작물, 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다년생식물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② **지급대상 농지에 적용되는 논농업(법 제5조)** :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98~'00년 동안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98~'00년 동안 계속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 및 '97년 이전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재배가 중단된 농지에서 현재 작목을 전환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외에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휴경 포함)하는 경우에도 쌀직불금 지급 가능

### 2.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일부위탁 포함)
- 일부위탁: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

### 3.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만㎡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
  -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으로부터 출자 또는 임대 받은 50만㎡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0만㎡ 이상의 농지를 임대 받아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 그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이 복합된 경우로서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참여시켜 50만㎡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법인

## 참고 2 농촌지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참고 3 신청·접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자격유지기간 : 9월 15일까지

#### 2. 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시 유의사항

- 신청자 서명, 농지소재지 이장·거주자의 서명 여부 확인 철저
-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수령자”는 “신청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철저
  - 신청농지가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제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 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 '19년부터 국·공유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면제에 유의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 3. 상한면적 초과 신청 시 처리요령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 상한면적까지만 지급

#### 4. 공동소유·경작 농지에 대한 처리

- (공동소유)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 지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공동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 일부 공동소유자에게서 무단점유 증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소유자 지분만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동경작)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5.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지급대상 농지

\*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불가(×)

구 분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	논타작물
밭고정	×	○	×	○	○	○
밭변동	×	○	×	○	○	×

## 참고 4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고
① 등록신청서	○ 모든 신청자(필수)	○ 매년 제출 ○ 생략 불가
①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과거 쌀직불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②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3년 이내에 쌀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자인 경우	
③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④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대상자일 경우	
⑤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기록	○ '18년에 쌀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 관외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⑥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신청자	
-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타인 소유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 국·공유지는 제출 생략

\* 전산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1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또는 ②, 필요한 경우 ③

- ① '98년~'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 확인자는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② '97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㉓, ㉔ 각 1개 이상씩
  - ㉓ '11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㉔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 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신규농지만 해당 (과거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제외)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2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① '05~'08년 중 1회 이상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③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 ㉓, ㉔ 각 1개 이상씩
  - ㉓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㉔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등
  - \* 2개 이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도 면적계산에 포함되며, 휴경면적은 면적계산에 제외
- ④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㉓, ㉔, ㉕ 중 1개 이상
  - ㉓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㉔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㉕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 ⑤ '04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 종사하였고,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임대·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㉓, ㉔ 중 1개
  - ㉓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㉔ 경작면적 증명서류 또는 농산물 판매액 증명서류 (③과 ④ 참고)

※ 최근 3년 이내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는 제외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1개 이상)
-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각 1개 이상씩
  - ㉠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등

\*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

※ 농촌 외 지역 거주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는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제출생략

### 4]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③, ④ 모두

- 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
- 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기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 ㉤, ㉥ 각 1개 이상씩
  -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 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가 아닌 자의 확인으로 갈음

※ 승계대상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5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모두**

①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 (관내경작자) ㉠ ~ ㉣ 중 1종 이상, (관외경작자) ㉤ ~ ㉨ 중 2종 이상

\* 관내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연결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포함)

\*\* 관외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신청인

㉠ 농산물 판매 영수증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 구매 서류 : 정부보급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획서 등

㉣ 계약재배 증명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명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등록신청 해당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것만 인정

\*\*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하는 경우만 인정

※ '18년에 신청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관외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제출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6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모두**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기간은 매년 확인 필수

※ (농외소득) 모든 신청자. 다만, 전산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무단점유) 타인 소유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만. 다만,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생략 (국·공유지 포함)

## 참고 5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 ①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참고 6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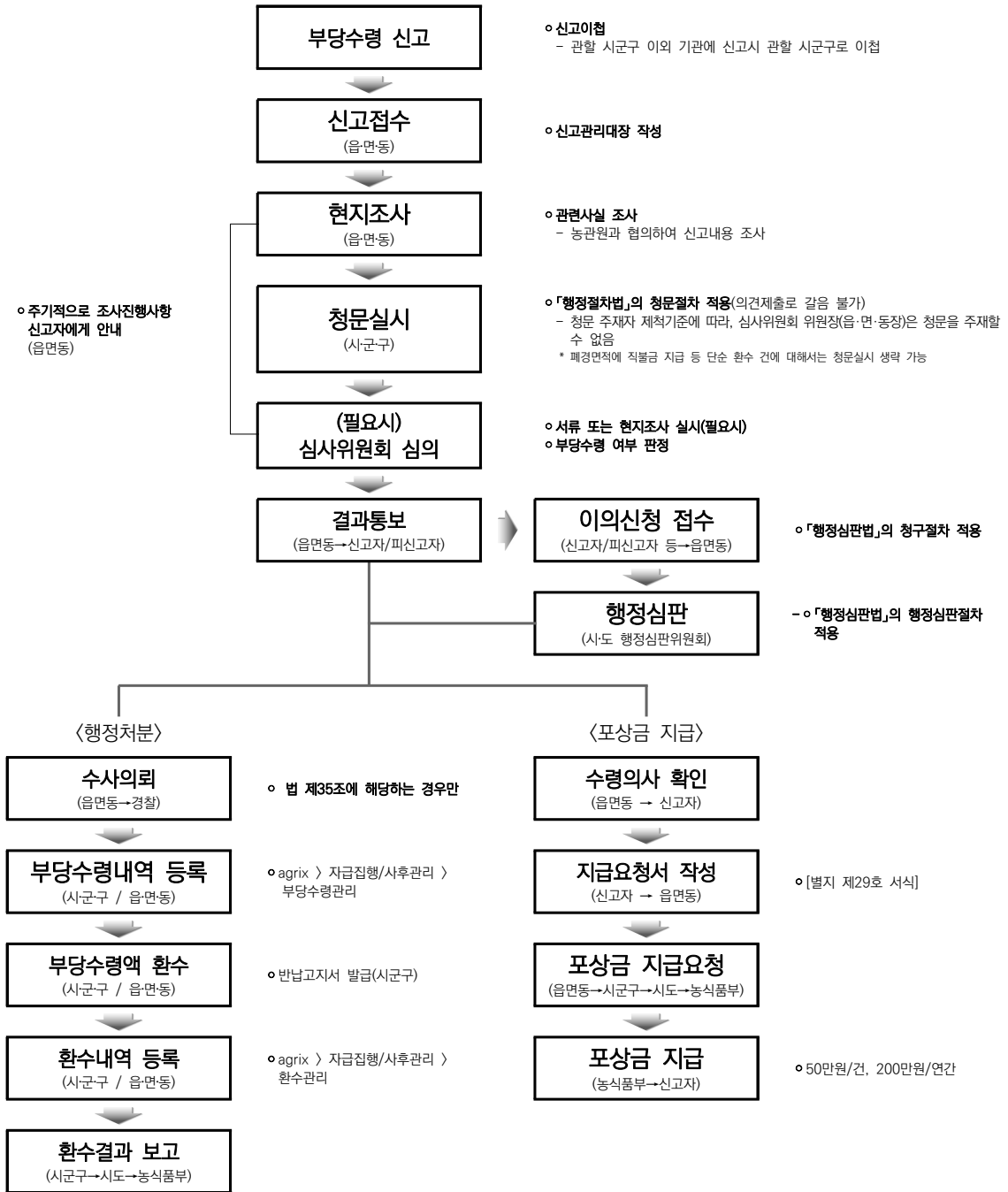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

구 분	유기물 함량 (g/kg)	유효인산함량 (mg/kg)	치환성칼리함량 (cmol+/kg)
일반 농지	11~40	150이하	0.30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20이하	0.60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50이하	0.30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50이하	0.30이하

\* 토양화학성분 함량 기준치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법을 적용하고 농경지 적정 양분함량 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수치임

## 참고 7 부당수령 신고·접수 시 처리절차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성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 참고 8 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2)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다.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p>라.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p> <p>2)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p>	<p>법 제14조 제1항제4호</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 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p> <p>-</p>
<p>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p> <p>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p> <p>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p> <p>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p> <p>다)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농농업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만 해당 한다)</p> <p>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14조 제1항제5호</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p> <p>-</p> <p>-</p>
<p>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 중 영 제10조에 따라 지급 요건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14조 제1항제5호</p>	<p>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p>
<p>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p> <p>가)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p>	<p>법 제14조 제1항제5호</p>	<p>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p>	<p>-</p>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나)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6호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 직접지불금 공동접수 계획
- [별지 제5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 [별지 제6호 서식] : 승계이사 확인서
- [별지 제7호 서식] : 경작사실 확인서
- [별지 제8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 [별지 제9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별지 제10호 서식] :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 [별지 제11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12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별지 제14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별지 제15호 서식] : 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 [별지 제17호 서식]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별지 제18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19호 서식] : 쌀소득보전직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 [별지 제20호 서식]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21호 서식] :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 [별지 제22호 서식] :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23호 서식] :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
- [별지 제24호 서식] :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 [별지 제25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 [별지 제26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 [별지 제27호 서식] :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
- [별지 제28호 서식] : 토양검사 결과 보고
- [별지 제29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 ]등  
농업경영체 [ ]등  
신청서 (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다만, 직불금·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9쪽 중 제1쪽) 30일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작성지불금·보조금 신청 [ ]생직불금 [ ]별고정직불금 [ ]조건불리보조금 [ ]노이모자보조금(발농업보조금) [ ]신청 없음		

**1. 일반현황**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우편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미등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형태 [ ] 전업 [ ]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농업종사형태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 전업 [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③ 공동경영주 여부(O, X)
경영주 외의 농업인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 전업 [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란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와 농업인이 공동경영주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O, 반대하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뒤쪽에는 작성방법 1. 일반현황 ②란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2쪽)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보조금·신청 ⑥은 쌀·직불금·밭·조건불리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⑥-1 지목란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주민등록주소지 : [ ] (마을명 : [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④(신청인1 성명) [ ] (연락처) [ ] (은행명) [ ] (신청인2 성명) [ ] (연락처)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④ 신청인란은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항목으로, 동일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또는 농업경영주외의 농업인만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대상 필자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번호	농지소재지	⑤-1 지목		⑤-2 농지면적(㎡) A ≥ B+C+D			⑤-3 시설현황		⑤-4 품목별 재배면적		⑥ 직불금·보조금 신청				필자상세 사유 -매매 -임차 -종료 -배경 -기타 ( )	농지 소유자	
		공부	실제	공부(A) A ≥ 지경+임차	실제 경작 면적 (B)	미이용	시실 종류	시실 면적	재배 품목	노지 (㎡)	시실 (㎡)	⑥-1 신청 시범명 [ ] 쌀 [ ] 밭 [ ] 조건불리 [ ] 논이모작	⑥-2 재배 품목	⑥-3 시설면적 (㎡)			⑥-4 농지 이용현황 (○, X) ⑥-5 신청인 신청일 (O, X) ⑥-6 <기주영농> 월: 98~00 년: 12~14 월간: 03~06
				지경 (㎡) (. . . ; ~ . . . )	임차 (㎡)		휴경 (C) (D)										

※ ⑤-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직불금·보조금의 등신청은 쌀·직불금, 밭·조건불리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업소득의 모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른 쌀·밭·조건불리특별제, 「시행규칙」에 따른 쌀·밭·조건불리특별제, 「농업소득의 모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⑥-2 쌀·직불금은 (벼/벼 이외/휴경), 밭·조건불리보조금은 (경작/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경작/휴경),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9쪽 중 제3쪽)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축산·곤충사육 농업경영체가 아님

⑦-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⑦ 사육시설 현황			⑦-3 사육정보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⑦-2 실제	지역	임차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 ⑩ 주요품목 및 재배면적(사육규모)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kg, 마릿수, 개)

⑩ 생산유통	재배면적(사육규모)		⑩-2 생산량	⑩-3 판매량	⑩-4 판매금액(만원)	⑩-5 주요 판매처
	⑩-1 주요 품목	식량	채소	과수	특용·약용	축산

\* 주요 판매처(번호 기입) : ① 정부공공비축, ② 농협, ③ 민간도정가공업체, ④ 도매시장, ⑤ 직거래, ⑥ 기타(상세 내용) 중 비중이 높은 하나만 작성합니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 등)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 조건직불금, [ ]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 조건직불금, [ ]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 인	년	월	일
		신청인 1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210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주신고사실증명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 축물관리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agriedu)
후계농경영인 신청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지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지불금, 밭고정보조금, 밭고정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의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년 월 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9쪽 중 제5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쌀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를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쌀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	→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검토 및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인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자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나 제61조에 따른 준농촌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경영주와 실제 함께 거주하는 농업종사자인 가족 또는 경영주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른 가족으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
-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경영주와 피부양자(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자(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18세 이상인 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을 제출한 사람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경영주의 배우자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⑥란에 신청합니다.

④란은 직불금·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은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필지삭제 사유 구분 : 매매(중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치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⑤-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메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⑤-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m<sup>2</sup>)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4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 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농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작성방법

- ⑥란은 직불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⑥-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고정,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과 논이모작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 ⑥-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재배한 사료·식량 작물의 품목을 적습니다.
- ⑥-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금·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결모리, 쌀모리, 맥주모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 밭고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 \* 논이모작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
- ⑥-5란은 직불금·보조금의 신청인 성명을 작성합니다. 신청인은 해당 농업경영체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④란의 신청자(은행, 계좌번호)에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축·군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⑦-1란은 가축·군축 등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군축사육 농업인이 아닐 경우 축산·군축사육 농업경영체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 ⑦-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 ⑦-3란은 사용하고 있는 가축 또는 군축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 ⑧란은 주요 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만 작성하며,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농축산물 등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주요 판매처를 적습니다. 다만, 기재된 품목이 전년도에 재배되지 않았을 경우 재배면적(사육규모)란에 '0'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⑧-1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⑧-2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 ⑧-3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 ⑧-4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 ⑧-5란은 판매된 주요 품목의 주요 판매처 1개만 적습니다.(빈호기입)
  - \* 주요 판매처는 ① 정부공공비축, ② 농협, ③ 민간도정가공업체, ④ 도매시장, ⑤ 직거래, ⑥ 기타(상세 내용)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I. 쌀직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의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5) 버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6) 그 밖에 농농업에 증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4. 신청인이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민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민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 · 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II. 밭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음장·면장·등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증명서류는 1. 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III.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음장·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소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2. 임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인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원칙)
  - \* 다만,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농정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택배 영수증 등 농지소유자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로 갈음 가능
3. 논·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 \* 다만, 이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한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 직불금 신청시 각종 증명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료 한정
4. 그 외의 증명서류는 1. 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농업경영체 [ ] 등록 농업경영체 [ ]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다만, 직불금·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10쪽 중 제1쪽)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보조금 신청	[ ] 쌀직불금 [ ] 밭고장직불금 [ ] 조건불리보조금 [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 ] 신청 없음	30일 90일

### 1. 일반현황

형태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합명 [ ] 합자 [ ] 주식 [ ] 유한 )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법인 주소	본점	(마을명 : )		
		본점	(마을명 : )		
			(마을명 : )		
	주요 사업	[ ] 생산 [ ] 가공 [ ] 유통 [ ] 수출 [ ] 농업서비스 [ ] 관광·휴양 [ ] 기타 [ ] 마을법인			
② 대표자	성명	국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동기이사 및 농업인 출자자					
⑤ 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명	외국인	명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보조금 신청** ※ ⑦은 쌀직불금, 발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⑥-1 지목란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명(생년월일) : (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연락처 : ( )  
 법인명 : ( )      법인주소지(마을명) : ( )      ( )  
 보조금 등 수령계좌 : ( ) 은행 (계좌번호)

번호	농지소재지	⑥-2 농지면적(㎡) A≥B+C+D				⑥-3 시설현황		⑥-4 품목별 재배면적			⑦ 직불금·보조금 신청				필지삭제 사유	농지 소유자
		⑥-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미이용	시설종류	시설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⑦-1 신청 사업명	⑦-2 재배 품목	⑦-3 신청 면적 (㎡)	⑦-4 농지 이용현황 (○,×) <기준연도> 쌀: '98~'00 밭: '12~'14 조건: '03~'06		
			자경 (㎡)	임차 (㎡)	경차 면적 (㎡)	휴경 휴경 (C) (D)										
				(...~...)												

※ ⑥-3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⑦번 직불금·보조금의 등신청은, 쌀직불금, 발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업소득의 모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뒤쪽의 '보조금 등 신청시 첨부서류\_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모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⑦-2 쌀직불금은 (벼/벼 이외/휴경), 발고정직불금은 (경작/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경작/휴경),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10쪽 중 제3쪽)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축산·곤충사육 범인이 아님

⑥-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군/㎡)
			공부	⑥-2 실제	지역	임차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⑨-1 주요 품목	⑨-2 재배면적 (사육규모)	⑨-3 생산량	⑨-4 판매량	⑨-5 판매금액	⑨-6 판매처별 비율						품목	판매금액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 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식량														
채소														
과수														
⑨ 생산 유통	특용 양봉													
	축산													
	기타													

(단위: ㎡, kg, 마릿수, %, 만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4쪽)

5. 추정 소득(전년도 연간)·자산·부채(작성기준일 : 전년도 12월말)

(단위: 만원)			
⑪ 농업소득	⑫ 농업 외 소득	⑬ 자산	⑭ 부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 조건불리보조금, [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 쌀직불금, [ ] 밭고정직불금, [ ] 조건불리보조금, [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신 청 인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읍장·면장·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 ·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하 동의합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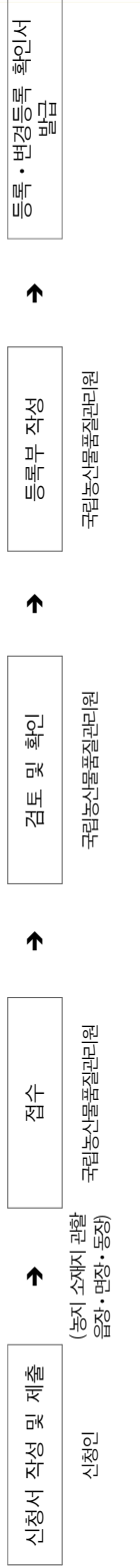
(10쪽 중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장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발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발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제외,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 주소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소사업에 해당하는 [ ]안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협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협회사법인은 등기이사과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농업인 증명 제출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확인서·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협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근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⑦란에 신청합니다.

- \* 직불금·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령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협회사법인)의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 사유구분 : 매매(중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 ⑥-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⑥-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 ⑥-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반호기임)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비닐),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유리),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m<sup>2</sup>)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⑥-4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 ⑦란은 보조금 등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⑦-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고정,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과 논이모작보조금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 ⑦-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보조금 신청하는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 작물을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
- ⑦-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금·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겨울비, 쌀모리, 맥주모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 ⑦-4란은 아래의 기준연도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O,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신규필지만 표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굵고 수정합니다.)
    -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 밭고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농지를 용담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 \* 논이모작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

작성방법

3. 가족·근속 시육시설 및 시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①란은 가족·근속 시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근속 등 시육능력이 아님에 체크합니다)
- ②-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 ②-2란은 실제 시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족시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시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 ②-3란은 실제하고 있는 가족 또는 근속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시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족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 ①란은 전년도에 유통·판매한 농산물의 실적입니다.
- ②-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판매 등 취급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 ②-2란은 ②-1란에 기재한 전년도 총 판매면적을 적습니다. 재배 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②-3란은 ②-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②-4란은 ②-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 ②-5란은 ②-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단위로 적습니다.
- ②-6란은 ②-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전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 ③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5. 추정 소득·자산·부채 :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작성기준일 준수)

- ①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 ②란은 아래의 농업 외 소득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총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 외 산업 총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 임대수임(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차·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생활비 등
  - 경조사임(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급 환급금, 사택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 ③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大)식물과 대(大)동물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갯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금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소(小)동물,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저채 등 재고자산의 금액
- ④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용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상품비, 관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용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점영활동(토지·건물·기계 구입, 그 밖의 점영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점원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

\* 등록신청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한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확인서, 고용계약서 중 택 1 :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조합원 5명 이상이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은 총 출자액의 10% 이상을 농업인이 출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보조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1. 쌀직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민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5) 버 등의 계약재매를 증명하는 서류
    - 6) 그 밖에 농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 신청인이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II. 발고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신청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연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발농연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농연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4. 그 외 증명서류는 1. 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III.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임차/사용자 농업인/농업법인인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원칙)
  - \* 다만,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농정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로 갈음 가능
- 논·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인서
  - \* 다만, 이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 직불금 신청시 각종 증명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료 한정
- 그 외 증명서류는 1. 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뒤쪽)

아래 확인사항 중 \*표시된 사항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의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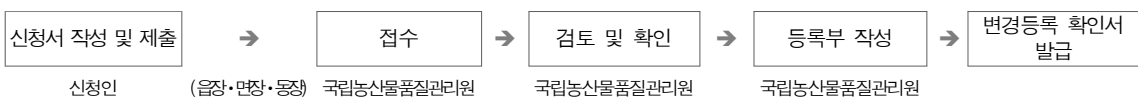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밭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 서식]

**직접지불금 공동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운영여부(O/X)	운영일자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쌀,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쌀('98~'00) 밭('12~'14) 조건('03~'05)
		읍·면·동	리·통	지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제2호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 쌀직불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초지로 관리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면·동	리·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 )에게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표)	농지 소재지			공부상면적 (㎡)	농지이용			재배 기간 (연도)
		읍·면·동	리·통	지번		재배면적(㎡)			
	벼				벼외	휴경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 표를 합니다.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료 한정
-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 (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 <sup>2)</sup>		이송 여부 <sup>3)</sup>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 <sup>1)</sup>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직접 접수	이송			

-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별지 제10호 서식]

###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0000년 00월 00일

인 계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인 수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붙임 : 인수인계 내역

###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			
			쌀	밭	조건	비직불





[별지 제12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 월일 (법인 등록 번호)	농업진흥지역 구분(m <sup>2</sup> )			농지이용 현황(m <sup>2</sup> )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안 면적	밖 면적	합계	벼재배 면적	벼 외 작물 재배 면적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성명	합계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m <sup>2</sup> )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안(m <sup>2</sup> )	밖(m <sup>2</sup> )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합계										

위 신청인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9월 15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등록증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 내용	농지 소재지			신청면적(m <sup>2</sup> )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벼 재배	타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면적(m <sup>2</sup> )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16호 서식]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팀장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벼	벼이외	휴경	①	②	③	④	⑤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⑤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17호 서식]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부적합 면적 (㎡)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 표시)					비고 (불이행 사유 등)	
읍면동명	본번	부번		벼	벼이외	휴경		①	②	③	④	⑤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 : 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 ② 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관리
-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 ⑤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별지 제18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19호 서식]

### 쌀소득보전직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읍·면·동 (사군·구)	등록신청 농업인					이행 농업인					불이행 농업인					비고			
	농업인 수	필지 수	농지면적(m <sup>2</sup> )				농업인 수	필지 수	농지면적(m <sup>2</sup> )				농업인 수	필지 수	농지면적(m <sup>2</sup> )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m<sup>2</sup>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 년산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m <sup>2</sup> )			소요 자금(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m<sup>2</sup>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년산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인원 (명)	지급 면적 (㎡)			지급 결과(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 대상		농약 잔류검사 부적합		토양검사 부적합		자금 소요액 (원)	농협경제지주 회사 취급사무소
	인 원	벼재배면적 (m <sup>2</sup> )	인원	면적(m <sup>2</sup> )	인원	면적(m <sup>2</sup> )		
00시								

※ 1ha = 10,000m<sup>2</sup>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협경제지주회사 취급 사무소 : 관내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농정지원단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를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경제지주회사 시흥시농정지원단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

기관명 :     시·군·구

(단위:원)

등록자 명칭	생년월일	예금주	은행 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 또는 지역본부장
-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지정사무소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 유의사항 : 농협 지정사무소에서는 등록자 성명과 예금주를 확인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항목 세부사항

-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경제지주회사 : 11, 국민은행 : 04 등
-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예) 농림부쌀직불

2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자금배정액			지급 결과			비고
	인원	면적 (㎡)	금액 (원)	인원	면적 (㎡)	금액 (원)	
합계							

※ 1ha = 10,000㎡

○ 보고 절차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시·도지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지사(농협경제지주회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부당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부당수령자 주소			
부당신청 농지 지번			
신 고 내 용			
<p>법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신고자  (인)</p> <p>○○○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li> <li>2.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li> <li>3. 기타 부당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li> </ol>			
<p>※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농지주소	위반행위 종류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포상금 지급액



[별지 제27호 서식]

##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m <sup>2</sup> )	농가수	벼재배면적 (m <sup>2</sup> )	농가수	벼재배면적 (m <sup>2</sup> )	
합계							

※ 1ha = 10,000m<sup>2</sup>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

### 토양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필지수	벼 재배면적 (m <sup>2</sup> )	농가수	필지수	벼 재배면적 (m <sup>2</sup> )	농가수	필지수	벼 재배면적 (m <sup>2</sup> )	
합계							1차년도 ( ) 2차년도 ( )	1차년도 ( ) 2차년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m<sup>2</sup>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지사(농촌진흥청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개요	신 고 일 자	피 신 고 자	직 불 종 류
	신 고 농 지		
	신 고 내 용		
포상금 지급신청	신 청 금 액		원 / 건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경유기관(시·도지사) 확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위 신청자가 신고포상금 수령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1. 통장사본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3. 부당수령신고 처리결과서(해당 부당수령신고를 처리한 기관에서 첨부)
------	--

##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처리결과서

### 1. 신고개요

- 신고일자 :
- 신고자 : (생년월일 : )
  - 주소지 :
  - 연락처 :
- 피신고자 : (생년월일 : )
- 신고농지 :
- 신고내용 :

### 2. 조사결과 및 처분결과

-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당수령 연도 :
  - 부당수령 농지 : (면적 : m<sup>2</sup>)
  - 부당수령 직불 :
  - 부당수령 금액 : 원
  - 부당수령 내용 :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수액 : 원 (부당수령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 년 ~ 년)

### 3. 부당수령 상세내역

- 부당수령자 : (생년월일 : )

직불 종류	수령 연도	농지 지번	면적 (m <sup>2</sup> )	금액(원)		비고
				고정	변동	
합계						



Part

# 02

## 발농업직접지불제 사업

I. 사업개요

II. 주요내용

III. 사업추진체계

※ 관련 서식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김영민 주무관 김지순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민원상담	044-201-1781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직불제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 I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발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발작물의 자급률 제고

### 2. 근거법령

- 받고정직접지불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발농업직접지불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3. 재원구성 : 국고 100%

###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90,646	193,738	207,790	계속
국 고	190,646	193,738	207,790	계속



## Ⅱ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발농업직접지불금(이하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자격요건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행점검 완료일(9.15.)까지 유지되어야 함

#### 가. 지급대상 농지

##### ①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이하 “밭고정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
  - 단, '11년 12월 31일 이전 1년 이상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 기간에 발농업이 중단된 경우는 지급대상농지에 포함
    -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 ②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논이모작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발농업에 이용되는 논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농지법 상 농지(「농지법」 제2조)

“농지”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지급대상 제외 농지

(「농업소득보전법」 제5조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 제2항)

①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발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발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발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가능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여 등록제한기간(밭고정 5년, 논이모작 3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 등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⑤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구 분	밭고정	논이모작	쌀직불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
밭고정		×	×	×	○	○
논이모작	×		○	×	×	○

\*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불가(×)

## 나. 지급대상자

### ① 받고정직불금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받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 \*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농업인) 받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받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 제외)에서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② 논이모작직불금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 단,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③ 승계자

- 밭농업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고령, 질병, 부상 등 밭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밭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5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9조)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③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발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 연접한 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다만, 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법정동 적용)

#### 〈농촌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 ① 읍·면의 지역
- ②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
- ③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 지급대상 제외자

(「농업소득보전법」 제6조 제3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4 제2항)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 단,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② 발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③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등록제한기간 : 받고정직불금 5년 이내, 논이모작직불금 3년 이내

④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 공동소유·경작 농지에 대한 처리

● (공동소유)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 지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공동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일부 공동소유자에게서 무단점유 증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소유자 지분만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동경작)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발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용어의 개념

① 발농업의 범위

※ 「농업소득보전법」 제2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

- (받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

- (논이모작) 논에서 보리, 밀, 콩 등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

② 종사 및 일부위탁의 범위

- (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일부위탁 포함)

- (일부위탁)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

## 다. 지급대상 품목

### ① 밭고정직불금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

### ② 논이모작직불금

-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
  - \* 시설: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것.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포함

####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울무, 감자, 고구마
- ② 청보리,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등

#### 논이모작직불금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산정

-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text{㎡} \times 80\% = 800\text{㎡}$
  - \* 다만, 필지 내 전체 재배면적 대비 대상품목 재배면적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며, 50% 미만일 경우 전체 필지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 라. 지급요건

### ① 받고정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급
  - 단,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② 논이모작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 지급
  - 단, 수확까지 이루어져야하며, 녹비용으로 재배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

-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② 이웃 농지와 구분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① 받고정직불금

- 지급단가 : 1ha 당 평균 55만원 (㎡당 55원)
  - (농업진흥지역 안) 702,938원/ha, (밭) 527,204원/ha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형태(재원) : 국고보조 10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② 논이모작직불금

-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 (㎡당 50원)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형태(재원) : 국고보조 10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① 밭고정직불금

- 농업인 : 4ha (40,000m<sup>2</sup>)
- 농업법인 : 10ha (100,000m<sup>2</sup>)

### ② 논이모작직불금

- 농업인 : 30ha (300,000m<sup>2</sup>),
- 농업법인 : 50ha (500,000m<sup>2</sup>)
-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400ha (4,000,000m<sup>2</sup>)

#### 상한면적 초과 신청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 용어의 개념

##### ① 법인

- 종사의 범위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필지의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농산물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해당 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미달

##### ②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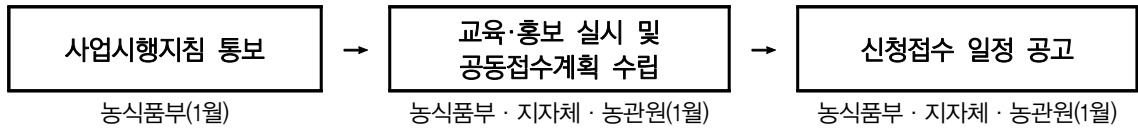


###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 ( )논이모작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li> <li>▶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시군구, 농관원)</li> </ul>
② 신청·접수	2월~4월 (2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농업인등) 및 접수(읍면동, 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추진</li> <li>- 등록신청서 접수증 발급</li> </ul> </li> <li>▶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li> </ul>
③ 신청자 정보공개	5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li> </ul>
④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5월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시군구)</li> <li>▶ 서류 및 현지조사(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 서류 구비여부 등</li> </ul> </li> <li>▶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경작여부, 무단점유여부 등 신청자의 발농업 종사 여부 심사</li> </ul> </li> <li>▶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및 등록증 발급(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li> </ul> </li> </ul>
⑤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5월~9월 (3월~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읍면동→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li> <li>- 등록자에게 지급대상농지를 양수·임차한 경우</li> </ul> </li> <li>▶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여부 이행점검(농관원)</li> <li>▶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농관원)</li> </ul>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자 확정(시군구)</li> <li>▶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시군구)</li> </ul>
⑦ 사후관리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농관원, 시군구 홈페이지)</li> <li>▶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사후관리</li> </ul>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 신청·접수 전(前) 단계



###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 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 다.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전년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내역을 발송하는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라. 공동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구)

- 시·군·구는 관할지역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공동접수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월)
  - 농관원과 협의내용, 읍·면별 집중접수 기간 및 일정, 기관 간 협조체계 등 포함
  - \* 시·군·구 주관으로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 설치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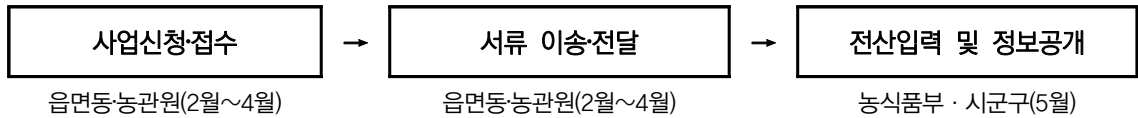
### 마.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관원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바.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

## 2. 신청·접수 단계



### 가. 사업신청(농업인등)

- 밭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등록 신청
- 신청기간: (논이모작) 2. 1. ~ 3. 8. (밭고정) 2. 1. ~ 4. 30.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 ⇒ 등록신청서만 제출
    - \* 임대차계약기간, 지번변동 등 확인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 ⇒ 등록신청서, 변동된 내용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서류
  - (신규신청자)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자 증명, 지급대상 농지 증명, 경작사실 증명

구 분	첨부 서류	비 고
<p><b>①</b> 지급대상 농지 증명</p> <p>①또는② 필요한 경우 ③</p>	<p>① '12년~'14년 동안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확인자는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p> <p>② '11년 이전 1년 이상 발농업에 이용되었으나, '12년~'14년 동안 불가피하게 발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㉔, ㉕ 각 1개 이상씩 ㉗ '11년 이전 1년 이상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㉘ '12년~'14년 동안 불가피하게 발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p> <p>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p>	<p>신규신청 농지만 해당 (과거에 1회 이상 발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 및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p><b>②</b> 지급 대상자 증명</p> <p>①②③ 중 1개</p>	<p>①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p> <p>②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발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 ㉔, ㉕ 각 1개 이상씩 ㉗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㉘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 2개 이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도 면적계산에 포함되며, 휴경면적은 면적계산에 제외</p> <p>③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발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㉔, ㉕, ㉘ 중 1개 이상 ㉗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㉘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㉘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p>	<p>신규 신청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p><b>② - 1</b>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 ①②③ 중 1개</p>	<p>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1개 이상)</p> <p>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㉓, ㉔, ㉕ 중 1개 이상 ㉓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㉔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㉕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p> <p>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㉖, ㉗, ㉘ 각 1개 이상씩 ㉖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㉗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㉘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p>	<p>농촌 외 지역 거주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p><b>② - 2</b> 승계 대상자 증명 ①②③④ 모두</p>	<p>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p> <p>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1개 이상)</p> <p>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㉙, ㉚, ㉛ 또는 ㉜, ㉝, ㉞ 각 1개 이상씩 ㉙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㉚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㉛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p> <p>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 외의 자의 확인으로 같음</p>	<p>승계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p><b>② - 3</b> 지급제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 ①② 모두</p>	<p>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p> <p>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 농지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의 필지지만,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국·공유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전산으로 확인)</p>	<p>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p><b>③</b> 경작사실 증명 ①② 모두</p>	<p>① 신청자가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p> <p>② 영농기록 - (관내경작자) ㉠ ~ ㉣ 중 1종 이상, - (관외경작자) ㉤ ~ ㉨ 중 2종 이상 * 관내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포함) ** 관외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신청인</p> <p>㉠ 농산물 판매 영수증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p> <p>㉡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p> <p>㉢ 종자·육묘 등 구매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획서 등</p> <p>㉣ 계약재배 증명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p> <p>㉤ 기타 증명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등록신청 해당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것으로 한정 **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하는 경우만 인정</p>	<p>신규 신청자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p>전년도와 신청 농지가 같고</p> <p>① 주소가 같거나 ② 관내에서 주소가 변동 되거나 ③ 관외에서 관내로 이주한 경우</p> <p>제출생략</p>

## 나. 신청접수(지자체 및 농관원)

### ① 신청서류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접수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서 접수

### ②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 ④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농지요건 확인 철저

### ③ QR코드 스캔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19년부터는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 ④ 접수증 발급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 제9호 서식) 발급

### 5 전산입력

- **입력기간:** 2월 ~ 5월초(논이모작 3월중순)
- **입력내용:** 등록신청서 2번항목의 ‘⑥ 직불정보’
- **입력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
    -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지급관할 읍·면·동에 있음

#### 신청정보 전산입력

-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 ② 농관원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에서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에서 모든 전산입력
- ③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3.8./4.30.) 기간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④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경영주 외 농업인 추가, 농지 추가)
  - 읍·면·동에서 직불정보를 우선 입력 후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 등록기간(3월/5월) 내 경영체정보 입력 후 읍·면·동은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다. 서류의 이송·전달(읍면동, 농관원)

- **이송기간:**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교환
- **원본보관:** 최초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보관
- **이송기관**
  - (지자체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지자체 → 농관원)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이송
  - (농관원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 농지소재지 읍·면·동이 2곳 이상인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으로 서류 이송,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후 타 읍·면·동으로 서류 재이송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동안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동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들의 편의에 따라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접수
  - \* 읍·면·동은 공동접수센터에 전산장비 및 전화 등 신청접수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관원은 읍·면·동별 접수반을 편성하여 사전에 읍·면·동에 통보하는 등 공동접수 준비
  - \*\* 지역여건에 따라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

#### 〈공동접수센터 운영시 접수처리〉

##### ① 접수증 발급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동에서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9호 서식) 발급
  - \* 읍·면·동에서 직불신청 정보 및 직불금 첨부서류 검토
  -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② 서류의 이송·전달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필수)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공동접수센터에는 읍·면·동과 농관원 담당자가 반드시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복사는 읍·면·동, 농관원 합동으로 진행

### 3. 신청자 정보공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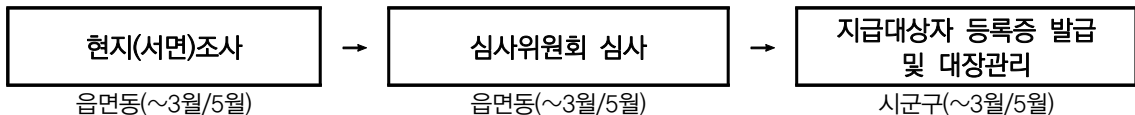
- 공개기간: 5월 ~ 9월
- 공개방법: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에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청

#### 주의사항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 4.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단계



####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읍면동)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신청인이 발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 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 ①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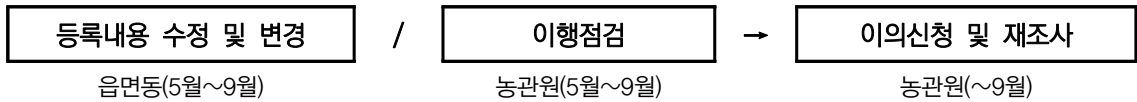
##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구, 읍면동)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기간:** (논이모작) 3월내, (밭고정) 5월내
- **발급요건 확인**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농지처분명령 대상자 신청 농지 등 제외)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발급방법**
  - ①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②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14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③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별지 제15호 서식)
    -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 주의사항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 5.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단계



### 가.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시군구, 읍면동)

#### ①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 ②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 (논이모작) 5. 24.까지, (밭고정) 9. 15.까지
  - **신청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구 분	필요 서류
<b>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b> ①②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서류 (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 (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b>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b> ①과③ 또는 ②와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신청시 첨부서류 참고

### ③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 주의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자격요건 상시검증

시·군·구(읍·면·동)은 신청자 및 등록자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지급 전까지 상시검증 실시

####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

- 농지법 상 농지인지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인지 여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인지 여부
-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인지 여부
- 중복지급 불가능한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농지인지 여부
-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내 농지인지 여부

####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법인 5만㎡)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 실제 밭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나.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① 지급요건 검증(읍·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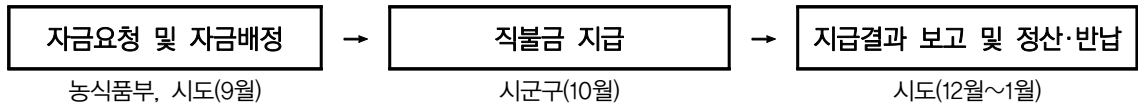
- 검증대상: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검증방법: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② 이행점검 실시(농관원)

- 점검기간: (논이모작) 3월말 ~ 5. 24., (밭고정) 5월말 ~ 9. 15.  
\* 지자체 통보기간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발농업직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필수 포함)
  - \* 점검비율: (밭고정) 전체 대상 필지의 30% 이상(현장점검 20%)  
(논이모작)전체 대상필지 대비 40% 이상(현장점검 40%)
- 점검내용
  - (논이모작) 대상품목 재배여부 및 재배면적 등
  - (밭고정)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등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별지 제16호 서식 활용)
  - \* 필요시 시·군·구(읍·면·동)에서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등 관련자료 확보(지자체 협조)
  - 특히,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 시 대상품목 재배면적 비율(논이모작) 및 동일 필지 공동경작 시 경계의 설치·관리(밭고정) 중점 점검 실시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하되, 이의신청 제기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시)신청자의 확인서 징구
- 결과통보: 농관원은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별지 제17호 서식)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매월)
  - \* 점검결과에 대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시 서면통보 생략 가능
  - 시·군·구에는 이행점검이 완료된 9.15.(논이모작 5.24.)까지 AgriX시스템을 통해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은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19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9월)



## 6.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단계



### 가.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 나. 직불금 지급(시·군·구, 읍·면·동)

- 지급시기: 10월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밭농업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밭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다. 지급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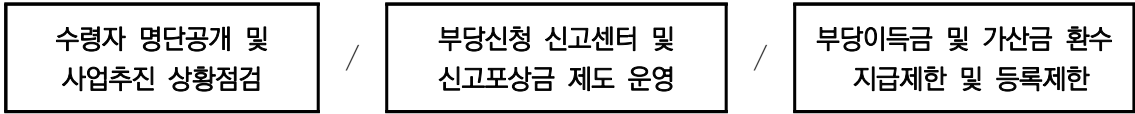
### 라. 정산 및 반납(시·군·구, 읍·면·동)

- 시·도는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금액 확정
- 시·도는 집행잔액 반납

#### 주의사항

시·도(시·군·구)는 자금교부 후 신속히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경, 성립전 등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전 계좌검증 철저

## 7. 사후관리 단계



### 가.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후 1년간
- **공개장소:**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http://www.agrix.go.kr)
- **공개내용:**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청
  -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 나. 사업추진 상황점검

- **교차점검:**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실시(4월, 10월)
- **중앙·지방 합동점검:**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5월, 12월)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 10월) 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 다. 부당수령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군·구)와 콜센터 연중운영

### 신고 및 처리 절차

- ① 해당 시·군·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 (1588-6830)를 통해 구두신고
  - \*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는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 콜센터 구두신고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 라. 신고포상금

- **포상금**: 건당 50만원, 1인 연 200만원 한도
- **대상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하여 부당수령임이 확인된 경우
- **수령절차**
  - 시·도는 서면(별지 제24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포상금 지급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보

###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 ①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 ②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부당수령자로 판명된 경우만 해당)
- ③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쌀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한함

## 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농업소득법」 제14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추가징수는 받고정만 해당)
  -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 내에서 증가산금 부과
- 징수(회수)절차
  - ① 납입고지서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② 납입: 납부의무자가 부당수령금을 납부 시,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 순으로 납입
  - ③ 결과입력: 시·군·구(읍·면·동)는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바.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농업소득보전법」 제14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10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기준)
  -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 사. 벌칙

- 아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자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3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4호 서식] : 직접지불금 공동접수 계획
- [별지 제5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 [별지 제6호 서식] : 경작사실 확인서
- [별지 제7호 서식] : 승계 의사 확인서(밭고정·논이모작)
- [별지 제9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 [별지 제10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별지 제11호 서식] :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 [별지 제12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13호 서식] : 발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별지 제14호 서식] :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별지 제15호 서식] : 발농업(밭고정, 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별지 제16호 서식] :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 [별지 제17호 서식] :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별지 제18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19호 서식] : 사도별 발농업(고정/논이모작)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보고
- [별지 제20호 서식] : 발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21호 서식] : 발농업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 [별지 제22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 [별지 제23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 [별지 제24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직접지불금 공동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운영여부(O/X)	운영일자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쌀,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작목 쌀('98~'00) 밭('12~'14) 조건('03~'05)
		읍·면동	리·통	지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27조제2호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 쌀직불: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초지로 관리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표)	농지 소재지			공부상면적 (㎡)	농지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재배면적(㎡)		
	벼				벼외	휴경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 표를 합니다.

[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 ]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 승계의사 확인서(밭고정·논이모작)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m <sup>2</sup> )	농지이용면적(m <sup>2</sup> )		
	읍·면·동	리·통	지번		합계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 <sup>2)</sup>		이송 여부 <sup>3)</sup>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처)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 <sup>1)</sup>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직접 접수	이송			

-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별지 제11호 서식]

###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0000년 00월 00일

인 계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인 수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불임 : 인수인계 내역

###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표시)			
			쌀	밭	조건	비직불







[별지 제14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 년도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마을명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성명	공부상 면적 (㎡)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안	밖	작물 재배	휴경
		합계								

위 신청인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9월 15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등록증은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마을명	농지 소재지			소유자	공부상		농지이용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재배품목
합계							

위 신청인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월 24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10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 이 등록증은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밭고정, 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신청 내용	농지 소재지			④신청면적(㎡)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계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 년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합계	작물 재배	휴경	적합면적(㎡)			부적합면적(㎡)			불이행항목			비고 (불일치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합계				재배	휴경	합계	폐경	기타	①	②	③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 년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재배	휴경	폐경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 등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 년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합계	작물 재배	휴경	적합면적(㎡)			부적합면적(㎡)			불이행항목			비고 (불일치사유 등)	
							합계	재배	휴경	합계	폐경	기타	①	②	③		
합계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

- 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 ② 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제18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직인



## 년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재배	휴경	폐경	기타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7에 따라 실시한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제18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직인

[별지 제18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19호 서식]

시·도별 밭농업(고정/논이모작)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도	지자체 요청			농관원 미점검(비표본)			농관원 점검(표본)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합계			적합			부적합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농가수	필지수	면적(ha)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밭고정, 논이모작 이행점검 결과 별도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발농업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사·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 인원(명)			지급 면적(m <sup>2</sup> )					지급 결과(천원)				
		합계	밭고정	논 이모작	합계	밭고정			논 이모작	합계	밭고정			논 이모작
						소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소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홀센타,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농지주소	위반행 위	지불 종류	처리 연월 일	처리내용	결과통 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별지 제24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 고 개 요	신 고 일 자	피 신 고 자	직 불 종 류
	신 고 농 지		
	신 고 내 용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원 / 건	
지 급 신 청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경유기관(시·도지사) 확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위 신청자가 신고포상금 수령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1. 통장사본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3. 부당수령신고 처리결과서(해당 부당수령신고를 처리한 기관에서 첨부)
------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처리결과서

### 1. 신고개요

- 신고일자 :
- 신고자 : (생년월일 : )
  - 주소지 :
  - 연락처 :
- 피신고자 : (생년월일 : )
- 신고농지 :
- 신고내용 :

### 2. 조사결과 및 처분결과

-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당수령 연도 :
  - 부당수령 농지 : (면적 : m<sup>2</sup>)
  - 부당수령 직불 :
  - 부당수령 금액 : 원
  - 부당수령 내용 :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수액 : 원 (부당수령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 ( 년 ~ 년)

### 3. 부당수령 상세내역

- 부당수령자 : (생년월일 : )

직불 종류	수령 연도	농지 지번	면적 (m <sup>2</sup> )	금액(원)		비고
				고정	변동	
합계						

Part

# 03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I. 사업개요

II. 주요내용

III. 사업추진체계

※ 관련 서식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김영민 주무관 김지순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민원상담	044-201-1781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직불제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 I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 2.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3.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58,795	63,160	68,309	계속
국 고	47,220	50,560	54,647	계속
지방비	11,575	12,600	13,662	계속

## Ⅱ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또는 “대상법정리”)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 ※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19년 1월)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 (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직불금 또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등
- \* 자격요건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행점검 완료일(9.15.)까지 유지되어야 함

#### 가. 지급대상 토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법」 상 농지 및 「초지법」 상 초지로,
  -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토지

###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①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 단,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가능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여 등록제한기간(3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 등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⑤ 「초지법」 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⑥ 다음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구 분	쌀직불	밭고정	논이모작	경관보전	친환경	논타작물
조건불리	×	×	×	○	○	○

\*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불가(×)

⑦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 과수·붕나무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 임산물, 다만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임산물의 조건불리직불금 해당여부 적용예〉

- 임산유실수(농림축산통계연보의 "수실")는 제외
  - : 밤, 잣, 호도, 도토리, 은행,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등
  - 대추는 "수실"에 포함되나 수종갱신 등으로 밭 재배가 일반화되었으므로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 시 지원
  - 다만, 복분자딸기, 머루, 다래 등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시설을 갖추고 재배·관리하는 경우 지원
- 수목류는 제외
  - : 소나무 등 조경수나 두충나무·헛개나무·옻나무·참죽나무, 녹차 등 식재 후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나무류
  - 다만, 땅두릅, 녹차 등 재배가 일반화 된 것은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하는 경우 지원
-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및 약용류
  - 임야가 형질변경되어 명확히 밭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묘목 구입 등을 통하여 재배하는 경우 지원
  - 다만, 오미자와 같이 시설을 갖추고 재배·관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관행처럼 임야에 형질변경 없이 재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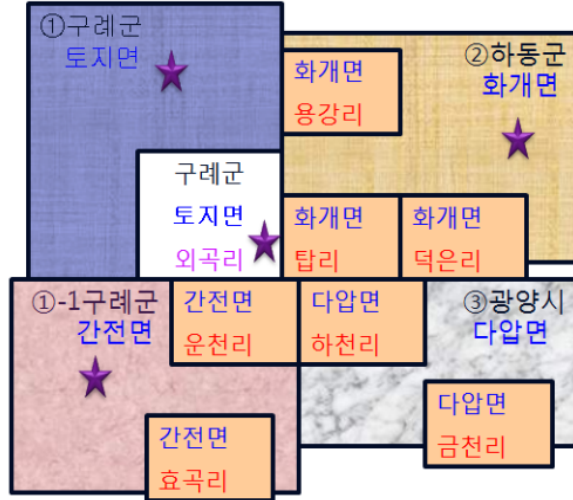
나.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 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으로,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자
  - 토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상 법정리에 연결한 읍·면에 거주하는 경작자만 인정
    - \* 거주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미
    - \*\* 연결: 행정구역 간 경계면이 잇닿아 있는 것을 의미. 강, 바다 등으로 경계면이 잇닿지 않은 경우는 연결으로 인정 불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연접지역 기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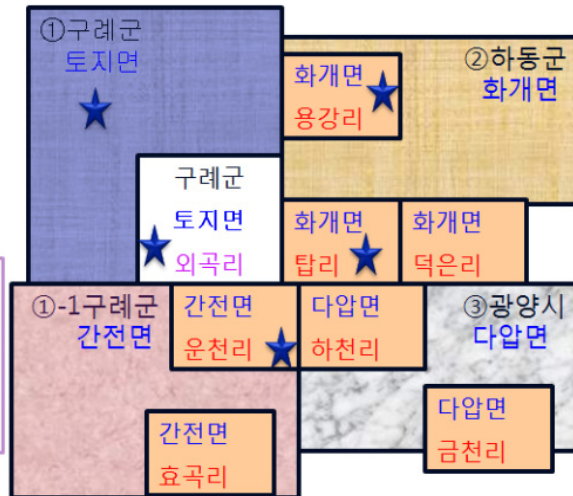
**외곡리에 토지가 있을 경우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 \* 토지면, 화개면, 간전면
- \* 외곡리와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



**외곡리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 \* 토지면, 화개면(용강리, 탐리), 간전면(운천리)
- \* 토지면에 연접한 법정리에 소재한 토지





### 승계대상자

- 조건불리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고령, 중환, 부상 등 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소유·경작 농지에 대한 처리

- (공동소유)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 지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공동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 일부 공동소유자에게서 무단점유 증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소유자 지분만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동경작)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급대상 제외자

-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 \*\* 단,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 ②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지면적 또는 초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 ③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④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 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 다. 지급요건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완료일(9.15.)까지 계속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 - 단,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지관리의무

- 농업인등은 사업시행기간(신청~이행점검 완료일) 동안 지급대상 토지를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로 경작 또는 관리(제초·잡목제거 등)할 것
  - ①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생산
  - ②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 불가피하게 경작(관리)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지자체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한 것으로 간주
  - \* 불가피한 사유 : 중환, 징집 또는 소집, 수용 등(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함은 농업인 등이 증빙)

##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급단가: (농지)1ha 당 65만원 (㎡당 65원), (초지)1ha 당 40만원 (㎡당 40원)
- 지급금액: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토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 공부상 전담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초지단가로 지급
- 지원형태(재원): 국고보조 8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20%

##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밭(과수원 포함) 4ha, 논·초지 각각 30ha
- 농업법인: 밭(과수원 포함) 10ha, 논·초지 각각 50ha

### 상한면적 초과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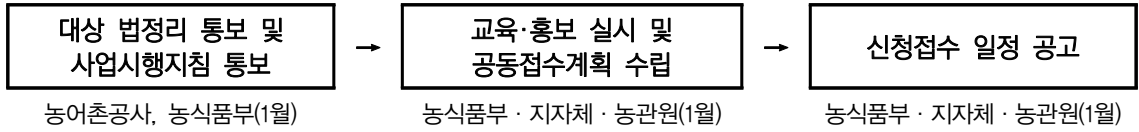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법정리 선정·통지(농식품부)</li> <li>▶ 마을기금 조성여부 결정 및 통보(사군)</li> <li>▶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li> <li>▶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사군, 농관원)</li> </ul>
② 신청·접수	2월~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농업인등) 및 접수(읍·면, 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추진</li> <li>- 등록신청서 접수증 발급</li> </ul> </li> <li>▶ 신청서 전산입력(읍·면)</li> </ul>
③ 지급대상마을 선정(해당마을만)	4월~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3~5인)</li> <li>▶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li> <li>▶ 지급대상 마을 선정 및 통보</li> </ul>
④ 신청자 정보공개	5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농식품부 및 사군 홈페이지)</li> </ul>
⑤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관리협약 체결	5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사군)</li> <li>▶ 서류 및 현지조사(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li> </ul> </li> <li>▶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경작여부, 무단점유여부 등 신청자의 농업종사여부 심사</li> </ul> </li> <li>▶ 지급대상자 선정(사군) 및 등록증 발급(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li> </ul> </li> <li>▶ 관리협약 체결(해당 마을만)</li> </ul>
⑥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5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읍·면→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li> <li>- 등록자에게 지급대상농지를 양수·임차한 경우</li> </ul> </li> <li>▶ 농지관리업무 및 관리협약 이행점검(농관원, 사도)</li> <li>▶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농관원)</li> </ul>
⑦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자 확정(사군)</li> <li>▶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사군)</li> </ul>
⑧ 사후관리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농관원, 사군 홈페이지)</li> <li>▶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li> </ul>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 사업신청·접수 전(前) 단계



### 가. 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통보(농어촌공사, 농식품부, 시도, 시군 등)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
  - \*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시·도에서는 자료제공 협조)
  - \*\*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자료 등
- 농식품부는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시도 및 농관원, 공사, 농정원 등에 통지
- 시도는 시군을 통하여 읍·면에 통지하고, 읍·면은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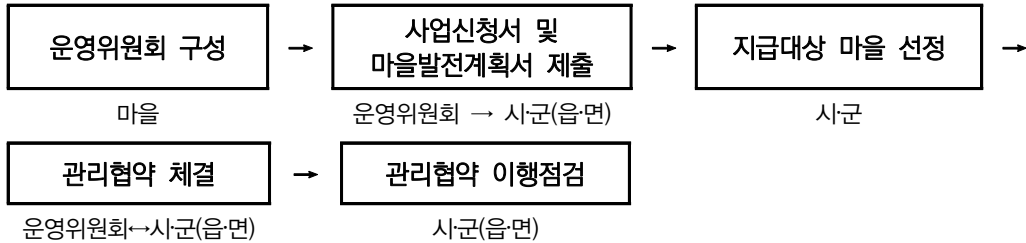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및 변동사항
- 조건불리직불금 제도변경 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시·군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적립비율 결정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시도, 시군)

- 시도는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최소 적립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1월)
  - 다만,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희망할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조성 허용 가능
  -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을 조성하지 않도록 허용 가능
- 시군은 마을공동기금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건불리지역 선정결과와 함께 공고하고, 관할 대상 마을에 안내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 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존 절차대로 진행



\* 절차별 세부내용은 해당항목 참고

-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상기과정 생략

- 다만, 기금적립금이 남아있는 마을의 경우 '19년에 기금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관리협약 이행점검'은 실시

**다.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라.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시·군) 및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마.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전년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내역을 발송하는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
- 시·도(시·군)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주의사항**

마을공동기금 적립 자율화 및 이에 따른 기존 적립금 사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

### 바. 공동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

-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별 공동접수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1월)
- 농관원과 협의내용, 읍·면별 집중접수 기간 및 일정, 기관 간 협조체계 등 포함
- \* 시·군 주관으로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 설치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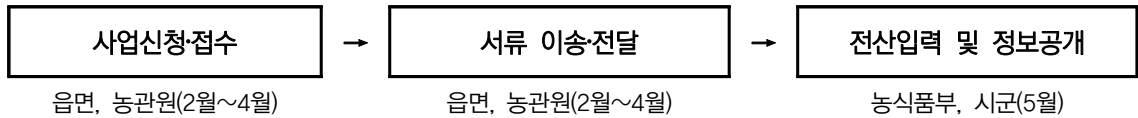
### 사.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관원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 아.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시·군, 농관원)

- 시·군은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

## 2. 신청·접수 단계



### 가. 사업신청(농업인등)

-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등록신청
- 신청기간: 2. 1. ~ 4. 30.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또는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 ⇒ 등록신청서만 제출
    - \* 임대차계약기간, 지번변동 등 확인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 ⇒ 등록신청서, 변동된 내용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서류
  - (신규신청자)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자 증명, 지급대상 농지 증명, 경작사실 증명 등

구 분	첨부 서류	비 고
<p>① 지급대상 토지 증명 ① 필요한 경우 ②</p>	<p>① '03년~'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조건불리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p> <p>② 지급대상 제외 토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과거에 1회 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제출생략</p>	<p>신규신청 농지만 해당</p>
<p>② 지급대상자 증명 ①</p>	<p>① 조건불리지역 또는 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p>	<p>신규 신청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p>② - 1 승계 대상자 증명 ①②③④ 모두</p>	<p>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p> <p>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1개 이상)</p> <p>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나, 라 또는 가, 다, 라 각 1개 이상씩 가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다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라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p> <p>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 외의 자의 확인으로 같음</p>	<p>승계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p>㉒ - 2 지급제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 ①② 모두</p>	<p>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p> <p>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 농지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의 필지지번,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국·공유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전산으로 확인)</p>	<p>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p>㉓ 경작사실 증명 ①</p>	<p>① 영농기록 - ㉑ ~ ㉔ 중 1개 이상</p> <p>㉑ 농산물 판매 영수증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p> <p>㉒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p> <p>㉓ 종자·육묘 등 구매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획서 등</p> <p>㉔ 계약재배 증명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p> <p>㉕ 기타 증명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p> <p>*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등록신청 해당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것으로 한정</p> <p>**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하는 경우만 인정</p>	<p>신규 신청자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 나. 신청접수(지자체 및 농관원)

### ① 신청서류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통합접수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또는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서 접수

### ②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에서는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으로 이송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 ④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농지요건 확인 철저

### ③ QR코드 스캔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19년부터는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 4] 접수증 발급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 제10호 서식) 발급

#### 5] 전산입력

- **입력기간:** 2월 ~ 5월초
- **입력내용:** 등록신청서 2번항목의 ‘⑥ 직불정보’
- **입력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면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면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면으로 이송
    -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면에 있음
  - 관할 읍·면·면은 타 읍·면·면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지급관할 읍·면·면에 있음

#### 신청정보 전산입력

- ① 타 읍·면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에서 타 읍·면 정보까지 모두 입력
- ② 농관원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에서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면에서 모든 전산입력
- ③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면에서 직불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4월) 기간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④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경영주 외 농업인 추가, 농지 추가)
  - 읍·면·면에서 직불정보를 우선 입력 후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는 등록기간(5월) 내 경영체정보 입력 후 읍·면·면은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다. 서류의 이송·전달(읍·면, 농관원)

- **이송기간:**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교환

- **원본보관:** 최초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보관
  - **이송기관**
    - (지자체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으로 이송
    - (지자체 → 농관원)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이송
    - (농관원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으로 이송
- \* 농지소재지 읍면이 2곳 이상인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으로 서류 이송,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서류 접수 후 타 읍·면으로 서류 재이송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동안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들의 편의에 따라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접수
  - \* 읍면은 공동접수센터에 전산장비 및 전화 등 신청접수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관원은 읍면 별 접수반을 편성하여 사전에 읍면에 통보하는 등 공동접수 준비
  - \*\* 지역여건에 따라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

#### 〈공동접수센터 운영시 접수처리〉

##### ① 접수증 발급 및 접수대장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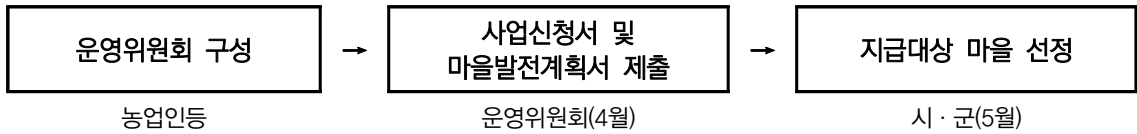
- 읍·면에서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0호 서식) 발급
- \* 읍·면에서 직불신청 정보 및 직불금 첨부서류 검토
-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② 서류의 이송·전달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필수)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공동접수센터에는 읍면과 농관원 담당자가 반드시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복사는 읍·면, 농관원 합동으로 진행

### 3. 지급대상마을 선정 단계(기금을 조성할 경우만)



#### 가.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농업인등)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려는 농업인등은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
  - **의결내용:**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개회조건:** 마을주민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
  - **의결기준:**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총회구성:** 해당 마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마을주민 전원(보조금 신청여부와 무관)
    - \* 마을총회에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마을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반드시 기금조성에 참여하여야 함
    - \* 조건불리지역과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해당마을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는 자율적으로 기금조성에 참여가능(참여희망자는 관리협약에 명시)
    - \* **마을총회 의결에 따라 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철회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접수 기간 내 타 직불제로 변경신청토록 안내**

#### 신청자의 주소지 별 마을공동기금 참여의무

신청자의 주소지	마을별 기금 조성여부	
	조성	미조성
해당마을 거주	반드시 기금조성 참여	기금 미조성
연접 읍면 거주	신청자 자율적으로 기금조성 참여여부 결정 가능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마을총회 의결서(예시)**

0000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00마을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일 자:
- 장 소:
- 참석인원: 마을주민 00명 중 00명
- 의결내용
  - 안건 1. 0000년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조성비율  
 ⇒ (의결내용) 0000년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조성 비율은 조건불리직불금의 00%로 한다.

참석인원	찬성	반대	기권	찬성비율
00	00	00	00	00%

- 안건 2. 0000년 조건불리직불제 마을운영위원회 구성  
 ⇒ (의결내용) 0000년 조건불리직불제 마을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한다.  
 운영위원장 000  
 운영위원회 000  
 운영위원회 000

참석인원	찬성	반대	기권	찬성비율
00	00	00	00	00%

0000년 00월 00일  
00마을 대표 000

붙임 마을총회 참석자 서명부 1부

※ 의결기준 충족여부가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찬성비율 명시 및 참석자 서명부 필히 포함

## 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농업인등, 읍·면)

- **제출시기:** 4월
- 운영위원회는 제출기한 내에 사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마을발전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를 결정한 마을총회 의결서와 함께 관할 읍·면장에 제출
- 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민통선 및 섬지역의 경우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급대상 법정리가 속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경우
  - 지급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경우
    -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 마을발전계획서에는 지역현황,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다. 지급대상 마을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5월)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마을 선정결과(별지 제29호 서식)를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5월)
- 시장·군수는 마을신청서를 Agrix 전산시스템에 등록

## 4. 신청자 정보공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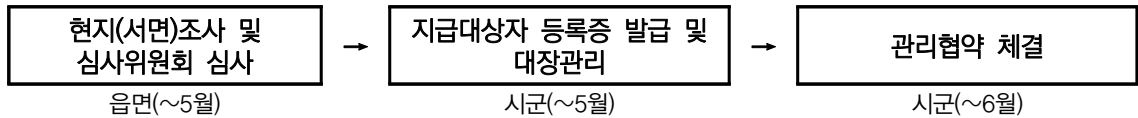
- **공개기간:** 5월 ~ 9월
- **공개방법:** 농식품부 또는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에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에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청

### 주의사항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 5.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읍·면)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신청인이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 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에게 제출

###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 읍·면)

- 발급권자: 시장·군수
- 발급기간: 5월내
- 발급요건 확인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농지처분명령 대상자 신청 농지 등 제외)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확인
- 발급방법
  - ①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 읍·면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②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15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③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별지 제16호 서식)
    -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 주의사항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 **위원장:** 읍·면장
- **위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 관할 리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실제 농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 ①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 ②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③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④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⑤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⑥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⑦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보(기금을 조성할 경우만)

- 시군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서면(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읍면 및 운영위원회에 통보
- 읍면 및 운영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농업인들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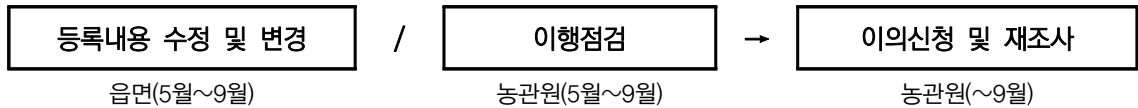
### 라.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체결(기금을 조성할 경우만)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위원장은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관리협약(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6월)
- 시장·군수는 관리협약 내용이 사업신청 시 제출된 마을발전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6월)
- 협약기간 중 합의내용의 변경은 상기 체결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

####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관리협약 미이행 시 제재사항
-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6.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단계



### 가.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시·군, 읍·면)

#### ① 등록내용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 ②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9.15.까지
- **신청 대상자:**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읍·면을 거쳐 시장·군수
  -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구 분	필요 서류
<b>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b> ①②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서류 (단, 읍·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 (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b>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b> ①과③ 또는 ②와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신청시 첨부서류 참고

### ③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은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 주의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자격요건 상시검증

시·군(읍·면)은 신청자 및 등록자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지급 전까지 상시검증 실시

####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

- 농지법 상 농지 및 초지법 상 초지인지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인지 여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인지 여부
-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인지 여부
- 중복지급 불가능한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토지인지 여부

####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 대상 법정리에 계속하여 주소지가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
-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나.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 지급요건 검증(읍·면)

- 검증대상: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검증방법: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 ② 이행점검 실시(농관원)

- **점검기간:** 5월말 ~ 9. 15.(지자체 통보기간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조건불리보조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토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필수 포함)
    - \* 점검비율: 전체 대상 필지의 30% 이상(현장점검 30%)
- **점검내용**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했는지 여부 등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별지 제19호 서식 활용)
  - \* 필요시 시·군(읍·면)에서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등 관련자료 확보(지자체 협조)
  - 특히, 동일 필지 공동경작 시 경계의 설치·관리 중점 점검 실시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하되, 이의신청 제기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시)신청자의 확인서 징구
- **결과통보:** 농관원은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별지 제20호 서식)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매월)
  - \* 점검결과에 대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시 서면통보 생략 가능
  - 시·군에는 이행점검이 완료된 9.15.까지 Agrix시스템을 통해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 서면(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은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22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9월)

## 다. 관리협약 이행점검(사군, 읍면)

※ 기금잔액이 있거나 해당연도에 기금을 조성한 마을만 해당

- 사군 및 읍면은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기금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기금의 사적 유용여부 등 점검
- 점검결과(별지 제24호 서식)는 사·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서면 보고(12월)

###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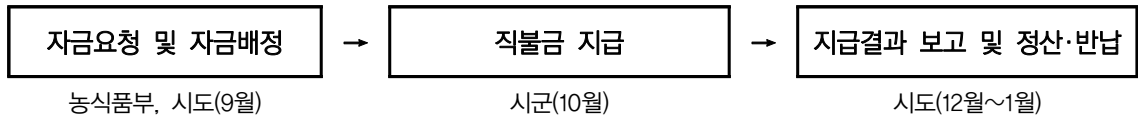
-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한 마을은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들의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5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 또는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 계좌는 가능한한 마을명의로 개설하고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
  - \* 기금적립 등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예시)**

-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 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도로 진출입로 개선 등
-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등
- ◆ **지역마케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효도관광, 마을주민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등
  -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냉·난방비, 전기료 등)
  - 재해보험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 보험, 재해보험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연구용역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지역특산품 개발, 농업기술개발 등 연구용역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만 가능(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 **기타** : 공동방역, 공동수로 정비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및 농용지 보전활동에 부합되는 사업수행 시 행정비(인건비 포함) 집행가능
  - \* 단, 인건비는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전체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가능(증빙자료 구비 철저)



## 7.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단계



### 가.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25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전금

### 나. 직불금 지급(시·군, 읍·면)

- **지급시기:** 10월
- **시·군(읍·면)**은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조건불리보조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조건불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다.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26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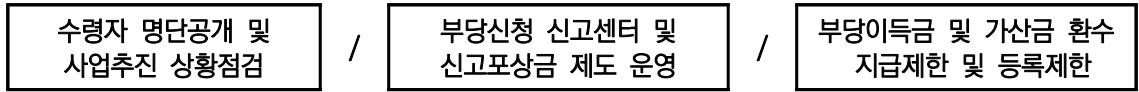
### 라. 정산 및 반납(시·군, 읍·면)

- 시·도는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금액 확정
- 시·도는 집행잔액 반납

#### 주의사항

시·도(시·군)는 자금교부 후 신속히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경, 성립전 등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전 계좌검증 철저

## 8. 사후관리 단계



### 가.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후 1년간
- **공개장소:** 농식품부 또는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청
    -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 나. 사업추진 상황점검

- **교차점검:** 시·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관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4월, 10월)
- **중앙·지방 합동점검:**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5월, 12월)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 10월) 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 다. 부당수령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군)와 콜센터 연중운영

#### 신고 및 처리 절차

- ① 해당 시·군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 (1588-6830)를 통해 구두신고
  - \* 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은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8호 서식)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으로 즉시 이송
  - \* 콜센터 구두신고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 ③ 시·군은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라.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시행규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
  -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농업인)	불이행	○1회: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2회: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3회 이상: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용 (마을공동기금 적립마을)	용도외 사용	○해당금액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관리협약에 따른 제재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마을공동기금 적립마을)	협약 불이행	○해당금액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관리협약에 따른 제재

※ 마을공동기금을 유용·횡령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군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
  -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적립한 기금도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자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
    - \* 마을공동기금 적립마을일 경우 시군에서 관리협약에 따라 제재조치

#### 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부정수급자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
- 징수(회수)절차
  - ① 납입고지서 발급: 시장·군수는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② 납입: 납부의무자가 부당수령금을 납부 시, 시·군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 순으로 납입
  - ③ 결과입력: 시·군(읍·면)은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3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4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사군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 결과
- [별지 제5호 서식] : 직접지불금 공동접수 계획
- [별지 제6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사업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 마을발전계획서(예시)
- [별지 제8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 [별지 제9호 서식] : 승계이사 확인서(조건불리)
- [별지 제10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 [별지 제11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별지 제12호 서식] :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 [별지 제13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14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별지 제15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신청자별/마을별)
- [별지 제16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 [별지 제17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 [별지 제18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 [별지 제19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 [별지 제20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별지 제21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22호 서식] : 시도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보고
- [별지 제23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 [별지 제24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결과
- [별지 제25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확정) 결과
- [별지 제26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별지 제27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 [별지 제28호 서식]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 [별지 제29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마을 선정 결과







[별지 제5호 서식]

**직접지불금 공동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운영여부(O/X)	운영일자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7호 서식]

## ○○리 마을발전계획서(예시)

1. 대상지역 :     시·도        시·군        읍·면        리(행정리)

###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호)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경지면적

(단위 : ha)

총면적	답			전			과수원			초 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활용	미활용

▪ 농경지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 3. 지역자원

- 마을 상징물(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마을 고유의 자원 :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농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 5. 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영농회 청년회 :	○ ○명	○회/월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농업마을, 전통문화마을, 농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발전목표 설정 이유
- 마을 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기금 활용 계획

-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 작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는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양식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
- 기 작성 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 점검, 새로운 내용과 미진한 사항 보완

[별지 제8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쌀,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m <sup>2</sup> )	재배작목 쌀('98~'00) 밭('12~'14) 조건('03~'05)
		읍·면동	리·통	지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27조제2호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 쌀직불: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초지로 관리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 위 경각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 승계의사 확인서(조건불리)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면적(m <sup>2</sup> )	이용면적(m <sup>2</sup> )				
	읍·면·동	리·통	지번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 )에 대해 (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군수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접수번호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장(사무소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 <sup>2)</sup>		이송 여부 <sup>3)</sup>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 <sup>1)</sup>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직접 접수	이송			

-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별지 제13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p>「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이의신청자 (인)</p> <p>○○○ 시장.군수 (귀하)</p>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농지 소재지			④신청현황(m <sup>2</sup> )			제외 사유	
	읍·면	리	지번 (가지번)	마을명	지목	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건 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  
균수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소		전화	

**2. 지급 대상자 및 대상토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급대상면적(m <sup>2</sup> )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합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 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지급대상면적을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8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법정리(마을명)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
대상면적	총	m <sup>2</sup> (논,	밭,	과수원, 초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 시장·군수

○○ 마을 운영위원회

조건불리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활동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마을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1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갑”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농업인등으로 마을공동기금 구성에 동참한 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는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정 제26조 따른 조건불리 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마을발전계획서 작성,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위원장은 마을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3쪽)

⑤ 회계담당자는 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 1. 농지관리 의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작 연도부터 사업시행 기간 동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의 경작·관리 의무

#### 2.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 가.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 나. 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 다. 기타 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 3.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

- 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등 마을활성화 실천과 경관작물 재배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에 반영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1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 및 관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4쪽)

제5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제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신고한 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제7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시행 지침 및 관리협약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 3. 관리협약 대상 지급대상자 및 토지 현황

연번	지급대상자				대상 면적(m <sup>2</sup> )					서명 (인)
	읍·면	리	성 명	생년월일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4.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다. 마을공동기금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조성 예정금액       천원)
-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라.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이행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기준

의무 사항	점검결과	제 재 기 준(예시)
마을공동기금 사용	용도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금액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li> <li>○ 모든 집행내역에 대한 시장·군수 승인(자율집행 금지)</li> <li>○ 분기별 사용내역 정산 보고</li> </ul>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협약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금액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li> <li>○ 모든 집행내역에 대한 시장·군수 승인(자율집행 금지)</li> <li>○ 분기별 사용내역 정산 보고</li> </ul>

(6쪽)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회계담당) 성명 : 인

**<작성 요령>**

- ① 1란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 ③ 3란은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립(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도로 진출입로 개선 등
-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등
-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효도관광, 마을주민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등
  -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냉·난방비, 전기료 등)
  - 재해보험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재해보험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연구용역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지역특산품 개발, 농업기술개발 등 연구용역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만 가능(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 **기타** : 공동방역, 공동수로 정비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및 농용지 보전활동에 부합되는 사업수행 시 행정비(인건비 포함) 집행가능
  - \* 단, 인건비는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전체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가능(증빙자료 구비 철저)

[별지 제19호 서식]

## 년 조건불리보조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2. 신청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지목, 재배·경운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읍·면	본번	부번	공부상 지목		지목	면적 (㎡)		

※ 신청내용의 지목중 목장용지는 초지를 의미합니다.

※ 불일치사유 판단 기준

- 미재배(미경운) : 이전년도까지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한 경우
- 휴경 : 2년 이상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하지 아니한 경우(농지형태 확인가능)
- 폐경 : 묘지, 도로, 잡목이 있는 등 농지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농지형태 확인 불가능)



[별지 제20호 서식]

## 년 조건불리보조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지목	공부상면적 (㎡)	신청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사유, 면적 등)
읍·면	본번	부번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조건불리 지역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직인



[별지 제21호 서식]

##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23호 서식]

<b>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20   년)</b>					
조사자 : ○○시·군   ○○읍·면   직   성명   서명					
<b>□ 마을 현황</b>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대상농지면적	m <sup>2</sup>		지급대상자수	명	
<b>□ 이행 상황</b>					
<b>○ 농지관리 의무</b>				이행점검결과	
① 대상 농지관리(경작) 및 초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 을 기재하고 “불이행” 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b>○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b>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 또는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b>□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b>					
<b>○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b>					
①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②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③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b>□ 마을공동기금 집행현황</b>					
(단위 : 원)					
‘19년도 마을공동기금 조성현황			기금 조성 총액 (~현재까지) (D)	기금 집행 총액 (~현재까지) (E)	기금 집행잔액 [F=D-E]
직불금 지급액 (A)	기금 조성액 (B)	기금 조성율 (C=B/A×100)			
* 기금잔액 때문에 점검하는 경우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집행현황’만 작성					













